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미래에셋증권

2. 조치일 : 2026. 2. 10.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 관	개선사항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고객확인 업무 체계 미흡

미래에셋증권㈜(이하 '회사')는 내규에 따라 고객확인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아래 ㈎~㈐와 같이 미흡한 사항이 있다.

㈎ 고객확인 업무절차 미흡

고객확인을 위한 업무절차서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 업무절차서를 2021년 개정한 이후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아 일부 내용이 상위 법규 또는 여타 내규 등과 부합하지 않거나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절차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사례가 있는 등 업무 담당자가 고객확인 업무절차를 파악하여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고,

영업점에서 수행한 고객확인 정보에 대한 적정성 점검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반면, 비대면 채널을 통해 확인한 고객확인 정보에 대한 적정성 점검 절차가 미비하여 일부 비대면 고객확인 정보의 정확성 및 타당성이 미흡한 사례가 있다.

또한, 재이행 주기 도래 전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 및 이행시기, 재이행 주기 도래가 임박한 고객과 재이행 주기가 경과한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 안내 및 거래제한 조치 등의 관리절차를 내규 등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시스템상으로만 통제하는 등 지속적인 고객확인을 위한 업무 운영체계가 미흡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상위 법규, 여타 내규 및 실제 운영 중인 업무절차 등과 부합하도록 고객확인 업무 관련 내규 등을 정비하고, 비대면 채널을 통해 확인한 고객확인 정보에 대한 주기적인 적정성 점검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한편, 재이행 주기 도래 전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는 고객, 재이행 주기 도래가 임박한 고객 및 재이행 주기가 경과한 고객 등 고객유형별 실효성 있는 고객확인 재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내규 등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위험평가모형 운영 미흡

회사는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평가하여 고객확인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객위험평가모형을 구축하고 '고객위험평가모델 정의서'를 마련하여 고객위험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고객위험평가모델 정의서'에 고객위험평가모형 운영·관리 관련 구체적인 업무기준 및 절차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고객위험평가 결과 고위험 등급 분류 기준을 전산시스템으로만 관리하고 있고 고객위험평가모형을 개선하면서 동 모형의 유효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국가위험 등급 등만 변경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고객위험평가모형의 관리체계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한, 기존고객에 대한 고객위험 평가항목에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결과 조치이력, 사기이용계좌 등록이력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결과 조치대상자의 ◎%, 사기이용계좌 등록이력 보유고객의 ◎%가 저위험으로 평가되는 등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유형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기에 미비한 측면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고객위험평가모형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세부 업무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동 모형의 유효성과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고객위험평가모형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결과 조치이력 및 사기이용계좌 등록이력 보유고객의 자금세탁 위험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른 관리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고객위험평가모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절차 미흡

회사는 고객과의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당해 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고객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 요주의 인물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반면, 한국 국적자인 고객에 대해서는 수기로만 요주의 인물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한국 국적자에 대한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의 적시성과 정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한국 국적자 고객에 대한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 불공정거래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강화

회사는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추출기준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중 일부는 정의된 조건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거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효과적으로 추출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구를 받는 경우 동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 후 수기로 의심스러운 거래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 적시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불공정거래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을 정의된 조건과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인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추출기준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사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구를 받는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3) 신상품 등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 업무 미흡

회사는 내규에 따라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이하 '신상품 등')를 출시하기 전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신상품 등에 대한 정의, 위험평가 생략 사유 등 사전위험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상품 등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고, '신상품 및 서비스 자금세탁위험 체크리스트'상 일부 평가항목은 위험점수에 따라 고위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고위험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단순히 Y/N(예/아니오)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신상품 등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가 고객위험 평가항목 중 '상품위험'에 반영되지 않아 고객위험 평가와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위험평가 결과 산정방식과 식별된 자금세탁 위험에 따른 차등화된 위험 경감조치 등 세부 업무기준이 미비하여 신상품 등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신상품 등을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 위험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된 위험을 효과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세부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비하여 운영하는 한편, 신상품 등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가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에 적정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